



Audit & Accounting Newsletter

November 2018



SAMIL | 삼일회계법인

Contents

I. 법규 제·개정 – 외부감사법	3
II. 회계	22
III. 감사	31
IV. 기타 - 감사위원회 관련 변경사항	37

"I. 법규 제·개정 - 외부감사법"의 내용은 개정 외감법 시행일(2018년 11월 1일) 이전에 공개된 법규,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및 설명자료 등을 바탕으로 정리된 것이며, 개정 외감법 시행 이후 개별 사안별로 관련기관의 해석이나 의견 등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이 있는 경우 해당되는 법규 조항과 검토 시점의 관련기관 해석 등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 법규 제 · 개정 – 외부감사법

1. 개정 일반사항

1) 개정 배경 및 취지

그동안 반복되어 온 대규모 분식회계를 계기로 회계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통한 투자자 보호 및 회계산업 선진화를 위해 감사인의 독립성 제고와 기업 등의 책임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전면적으로 외부감사법이 개정됨

개정된 외부감사법의 주요 개정 방향 및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회사 : 회계처리에 대한 책임 및 자체 역량 강화

- ① 감사인 선임 권한을 내부감사기구(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로 이관
- ②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및 금융회사의 회계규율을 상장사 수준으로 강화
 - 감사인을 회계법인으로 제한,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동일감사인 선임 의무 등
- ③ 주식회사로 한정되어 있는 외부감사 대상을 유한회사까지 확대
- ④ 회사의 회계처리 관련 내부통제 실효성 제고
 - 대표이사가 내부회계관리 실태를 직접 주주총회에 보고토록 의무화
 - 주권상장법인의 내부회계관리에 대한 감사인의 점검수준을 "검토"에서 "감사"로 강화
- ⑤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회사의 책임 강화
 - 감사인에게 재무제표 대리작성을 요구하는 것 금지
 - 법정기한(주총 6주전) 내 재무제표 미제출시 그 사유를 공시해야 하는 의무 신설
- ⑥ 회계부정 적발/조치에 대한 내부감사기구의 역할 강화
 - 감사인이 회계부정 통보 시 내부감사기구는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 후 경영진에 시정 요구해야 하는 의무 신설 (대표이사는 조사비용 부담 및 자료협조 의무)

□ 감사인 : 회사로부터의 독립성 확보 및 감사 품질 제고

- ① 감사인 선임 기한 단축
 - 감사위원회 의무 설치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 전까지, 그 외 회사는 45일 이내로 단축
- ② 감사인 지정제를 감독 보완수단으로 적극 활용
 - 주기적 지정제 도입 : 모든 상장법인 및 소유 · 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가 연속 6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자유수임한 경우 다음 3개 사업연도 감사인 지정
 - 직권 지정제 대상 확대 : 연속 3개년 (-) 영업현금흐름 등 대상 확대
- ③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 도입
 - 상장회사 감사는 감사 품질관리체계 구축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회계법인만 허용
- ④ 표준감사시간제 도입

□ 정부 : 회계부정 및 감사부실에 대한 감독 역량 및 제재수준 강화

- ① 외부감사법 상 과징금제도 신설 (상한 금액 없음)
- ② 회계부정 관련 회사 및 감사인에 대한 제재수준 강화
- ③ 회계부정 내부신고자 보호 강화

2) 시행일

개정 외부감사법의 시행일은 18.11.1이며 일부 조항은 별도의 시행일을 정하고 있음. 주요 개정사항 별 시행일은 다음과 같음

시행일	주요 개정사항
18.11.1 부터	- 직권 지정대상 확대 -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대표자 보고의무 강화,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예외 대상회사 신설 등
18.1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 외부감사인 선임 기한 단축 - 외부감사인 선임권자 변경 - 3개 사업연도 동일 감사인 선임 대상 확대 - 감사인 자격요건 강화(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 제외) - 감사인 선정 관련 기준과 절차 문서화, 대면회의 개최 및 이행여부 사후 확인
19.1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 - 외부감사 대상범위 확대 - 주기적 지정제 - 지정절차 개선
자산규모에 따라 순차적용	- 주권상장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를 감사로 상향 및 연결기준 확대

2. 외부감사인 선임 기한 단축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로 일률적이었던 감사인 선임기한이 회사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단축됨 (법 10조 ①, ② - 18.1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출처 : 18.9.17 금감원보도자료)

구 분	감사인 선임기한	기한 예시 (12월 결산법인 가정)
「상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1)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	18.12.31
외부감사대상 첫째인 회사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	19. 4.30
상기 외 회사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	19. 2.14

(*1)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

- ① (상법)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
- ② (금융사지배구조법) 다음 회사를 제외한 금융회사
 -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 5조원(상장사는 2조원) 미만 보험회사·여신전문금융회사·금융투자업자(*)·종합금융회사, 자산 7천억원 미만 상호저축은행
 - (*) 집합투자재산·투자일임재산·신탁재산의 합계액이 20조원 미만인 경우에 한함

유의사항

- ① 감사위원회 의무 설치대상이 아닌 회사가 감사위원회를 임의로 설치한 경우, 선임기한은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이 아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이내임. 단, 이 경우 감사인 선임은 감사위원회에서 선정
- ② 10월 결산법인부터 단축된 선임기한 내에 감사인 선임절차를 마무리해야 함. 선임기한 미 준수 시 감사인 지정 조치 대상이므로 사전 준비 필요

3. 외부감사인 선임절차 변경

1) 감사인 선임권자 변경 (회사 →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법 10조 ④ - 18.1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구 분	감사인 선임권자
주권상장법인, 대형비 상장주식회사 ¹ , 금융 회사 ²	①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 감사위원회가 선정 ② 그 외: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 ※ 직전 감사인을 재선정하는 경우에도 예외 없음
이 외의 회사	① 감사가 선정 ② 직전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재선임하는 경우 : 그 감사인으로 선임(증 선위 선임보고 불필요 – 법 12조 ② 3호) ③ 감사가 없는 유한회사 : 회사가 선정(단, 자본금 10억원 이상의 유한 회사는 사원총회 승인 필요 – 령 13조 ①)

□ 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령 12조 ①)

감사인선임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함. 다만, 해당되는 인원이 7명에 미달할 경우 회사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경영·회계·법률 또는 외부감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 가능

- ① 감사 1명
- ② 다른 법령에 따라 선임한 사외이사가 있는 경우 그 사외이사 중 2명 이내
- ③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의결권 있는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기관투자자의 임직원 1인
 - 지배주주(특수관계자 포함) 인 기관투자자는 제외
- ④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의결권 있는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한 주주 2인
 - 지배주주(특수관계자 포함) 및 임원인 주주는 제외
 - ③ 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 제외
- ⑤ 감사인선임위원회 개최통보일 전날 기준 채권액이 가장 많은 2개 금융회사의 임원 각 1명
 - 지배주주(특수관계자 포함) 인 금융회사는 제외

(*)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연도 개시 후 감사인선임위원회 개최 통보일의 전날까지 소유주식수가 현저히 감소한 주주는 제외

¹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

² 「금융회사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농협은행

유의사항

- ①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자산 1천억원 이상 조건은 연결재무제표가 아닌 (별도)재무제표 기준임
- ② 2019년 감사계약부터 대형비상장주식회사, 금융회사 중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계약 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구성을 위한 사전 준비 필요. 특히, 감사계약 체결기간이 단축된 첫해이고 채권금융회사와 기관투자자의 중복이 예상됨에 따라 일정 사전 협의가 필요
- ③ 개정전 비상장회사의 경우 동일한 감사인을 재선임하는 경우에는 편의를 고려하여 감사인 선임절차 및 선임보고가 요구되지 않았으나 개정 외감법에 의해서는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및 금융회사의 경우 전기 동일감사인을 재선임하는 경우에도 예외없이 감사인 선임절차 및 선임보고 의무를 준수하도록 강화되었으므로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

2) 3개 사업연도 동일 감사인 선임 대상 확대(법 10조 ③ - 18.1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주권상장법인뿐만 아니라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및 금융회사도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

유의사항

- ① 대형비상장주식회사중 2년 이상의 기간에 대해 임의로 감사계약을 기체결한 경우, 외감법상 인정되지 않으므로 잔존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개정 외감법을 준수하여 2019년에 3년기간에 대한 감사인을 새로 선임해야 함

3) 감사인 자격 요건 강화(법 9조, 9조의2)

주권상장법인뿐만 아니라 대형비상장주식회사 및 금융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도 “회계법인”만 수행하도록 자격 요건 강화(18.1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특히, “주권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를 신설하여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회계법인만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감사가 수행 가능하도록 하였음 (19.1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유의사항

- ① 주권상장법인이 계약체결한 감사인이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잔존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도 2020년에 대한 감사인을 새로 선임해야 함

4) 감사인 선정 관련 기준과 절차 문서화, 대면회의 개최 및 사업연도마다 이행여부 사후 확인 절차 추가(법 10조 ⑤, ⑥, 령13조 ③~⑤ - 18.1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구 분	내 용
감사인 선정 관련 기준과 절차 문서화	① 감사(감사위원회)는 감사인의 감사보수, 감사시간, 감사 필요 인력에 관한 사항을 문서화 ② 감사인 선정 관련 기준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 되어야함 - 감사시간, 감사인력, 감사보수, 감사계획의 적정성 - 감사인의 독립성 및 전문성 - 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 내용 및 전기 감사 사후평가 내용 등 ③ 감사위원회 미설치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금융회사의 감사는 상기 사항에 대해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 필요
감사인 선정을 위한 대면회의 개최 (필수)	감사위원회, 감사인선임위원회 및 사원총회는 감사인 선정을 위한 대면회의를 개최하고 아래 사항을 문서화 ① 감사인 선정 기준에 대한 검토결과 ② 대면회의 개최횟수, 참석자 인적사항, 주요 발언내용
이행여부 사후 확인	① 감사(감사위원회)는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감사인 선정 관련 기준의 이행 여부를 매년 확인 ② 감사위원회 미설치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주식회사, 금융회사의 감사는 이행여부를 확인한 문서를 감사인선임위원회에 제출

i 유의사항

- ① 18.11.1 이후 선임하는 감사인부터 적용대상이므로 17~18사업연도에 3년계약을 체결하여 잔여 감사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주권상장법인은 문서화 적용대상이 아님

4. 외부감사 대상범위 확대

외부감사대상이 유한회사로 확대되었으며 매출 등 요건이 추가되었음(법 4조 ①, 령 5조 ①, ② - 19.1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 외부감사 대상 : 다음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

① 주식회사 : 4개 기준 중 3개에 해당하면 소규모 회사로 제외

자산	부채	매출액	종업원 수
120억원 미만	70억원 미만	100억원 미만	100인 미만

② 유한회사 : 5개 기준 중 3개에 해당하면 소규모 회사로 제외 (*)

자산	부채	매출액	종업원수	사원수
120억원미만	70억원 미만	100억원 미만	100인 미만	50인미만

(*) 법 시행일(19.11.1) 이후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변경한 경우에는 5년간 주식회사와 동일한 기준 적용(령 5조 ② 단서)

③ 상기 3개 해당되더라도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는 외감대상임

유의사항

- ① 기준중 재무정보는 연결재무제표가 아닌 (별도)재무제표 기준임
- ② 매출액의 경우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출액을 12개월로 환산하여 판단

5. 외부감사인 지정제도 변경

1) 지정대상 확대

□ 주기적 지정제 신설(19.1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1) 주기적 지정제 대상(법 11조 ②)

연속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주권상장법인(코넥스 제외 – 령 15조 ②) 및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회사(*)의 다음 3개 사업연도 감사인 지정

(*)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회사의 정의(법 11조 ② 2호, 령 15조 ③, ④)

- ①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
- ②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율이 50% 이상, &
- ③ 지배주주 또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대표이사인 회사

유의사항

- ① 기준중 재무정보는 연결재무제표가 아닌 (별도)재무제표 기준임
- ②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의 지분을 고려시 개인 뿐만 아니라 법인 지분도 포함하여 판단
- ③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를 의미(규정 15조 ②)하므로, 대표이사가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지정대상이 아님
- ④ 소유경영미분리의 판단기준일은 직전 사업연도말이며, 지정대상선정일(사업연도 개시 후 9개월째되는 달의 초일) 현재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지정대상 선정일로부터 2주 내에 제출하는 경우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음(규정 시행세칙 12조 ②)

(2) 지정 면제 요건(법 11조 ③, 령 15조 ⑤)

- ① 과거 6년 이내에 증선위의 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되지 아니한 회사, or
- ② 증선위에 감리를 요청(*)하여 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 감리 신청 요건 : 최근 3년 (감리신청 사업연도와 직전 2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의견 적정, 동 의견 표명 감사인을 3년간 감사인으로 선임하지 않는다는 확약서 제출, 과거 6년 이내에 감리를 받지 않았을 것

(3) 지정 연기 요건(규정 14조 ②)

- ① 주기적 지정제가 최초로 적용되는 사업연도(19.11.1 이후 개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포함한 3개 사업연도 동일 감사인 선임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 ② 증선위의 감리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 ③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회사간의 주기적 지정대상 사업연도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경우

유의사항

- ① 증선위는 주기적 지정 시행 첫해인 ('20년)에 지정대상회사가 집중되는 것을 고려하여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연간 220여개씩 분산 지정할 예정임
- ② 대상 선정시 직전 사업연도 지정이 연기된 회사가 있는 경우 그 회사부터 지정하고, 그 외에는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큰 회사부터 지정(규정 14조 ③)
- ③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회사가 지정일치를 위해서는 지정사업연도가 빠른 회사의 감사인 지정을 2년까지 연기가능. 단,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는 제외하며, 하기 요건 중 하나 충족 필요(규정 14조 ② 3호)
 - 감사인 지정연도가 달라서 회사집단의 경영효율성이 현저히 저해되는 등 과도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경우
 - 감사인 지정을 늦게 받는 회사가 지정을 앞당기는 것이 곤란한 경우

□ 직권 지정대상 확대

(1) 지정대상 확대(법 11조 ①, 령 14조 – 18.11.1 부터)

공정한 감사의 필요성이 높은 재무상태 악화 및 최대주주·대표이사의 변경이 잦은 상장사 등을 직권지정대상으로 추가

(출처 : 18.9.17 금감원보도자료)

구 분	주요 직권지정 사유
유지	①상장예정법인 ②감사인 미선임 ③감리결과 조치 ④상호저축은행법상 지정요청 ⑤재무기준(부채비율 과다) ⑥관리종목 ⑦횡령·배임 발생 등
폐지	①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미비
신설	①감사인이 재무제표를 대리작성하거나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을 요구하거나 받은 회사, ②기관투자자인 주주의 지정요청, ③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에 현저히 미달한 회사, ④지정기초자료 미제출 ⑤재무기준(3년 연속으로 영업손실, 부(負)의 영업현금흐름, 이자보상배율 1미만), ⑥과거 3년간 최대주주(2회)·대표이사(3회) 변경, ⑦투자주의 환기종목 등

* 볼드체는 주권상장법인에만 적용되는 지정사유(단, 투자주의환기종목은 코스닥상장법인만 해당)

i 유의사항

- ① 지정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재무기준은 연결재무제표가 있는 경우 연결재무정보 기준임(령 14조 ① 1호, 규정 12조 ③)
- ② 상장예정법인이 해당사업연도 중에 상장되지 못하여 그 이후 사업연도에 기존 지정감사인과 계속감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동 감사인을 증선위가 지정한 것으로 간주하던 규정이 폐지됨. 따라서 상장예정법인이 다음 사업연도에도 지정감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감사인 지정요청을 다시 해야함
- ③ 대표이사 변경은 1인 대표가 수인 대표로 되는 경우, 수인 대표가 1인 대표로 되는 경우, 수인 대표 중 1인이 변경된 경우를 모두 포함함(규정 시행세칙 별지 19호 서식)
- ④ 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에 현저히 미달할 경우 직권지정 대상이 되며, 국세청에 통보되어 세무조사 대상 산정근거로도 활용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 필요
- ⑤ 지정대상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한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된 법인이 추가되었음. 다만,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감사 의견변형 등으로 인해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된 경우는 감사인 지정대상에서 제외함(령 14조 ③ 2호)

(2) 지정대상 판단 기준일

- ① 재무기준 (3년 연속으로 영업손실, 부(負)의 영업현금흐름, 이자보상배율 1미만) 사유 : 직전사업연도를 포함한 이전 3개 사업연도(규정 12조 ②)
- ② 과거 3년간 최대주주(2회)·대표이사(3회) 변경 사유 : 지정대상선정일로부터 과거 3년간(규정 12조 ⑧)
- ③ 관리종목·투자주의 환기종목 사유 : 지정대상선정일 현재(규정 시행세칙 12조 ①)

i 유의사항

- ① 재무기준 선정을 위한 3개사업연도는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3개사업연도를 의미함 (즉, 개정 외감법 시행일 이전 재무정보가 포함됨)
(사례) '20년에 대한 지정 대상을 19.9.1에 판단하되, '16~'18년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판단함
- ② 과거 3년간 최대주주 변경 2회 또는 대표이사 변경 3회 판단 시 과거 3년은 지정대상선정일 (사업연도가 시작된 후 9개월째되는 달의 초일) 로부터 기산함. 최근 3개 회계기간이 아님에 유의

2) 지정절차 개선(19.11.1 이후 개시 사업연도에 대한 지정부터 적용)

감사인 선임기한 단축 등 외감법규 개정 및 회사의 감사수요 등을 반영하여 지정절차 개선

(1) 지정시기(령 17조, 규정 15조 ①, 규정 별표2)

감사인 선임기한 단축을 감안, 다음 사업연도 감사인을 지정하여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부여하기 위해 직전사업연도에 대상 회계연도의 감사인을 지정

단, 회사 등의 지정요청, 감사인 미선임, 법규위반(선임절차 위반, 재무제표 대리작성, 감사전 재무제표 미제출 등), IPO 예정 등 당해 사업연도 감사인 지정이 필요한 경우는 당해 사업연도에 지정(다만, IPO 예정 등의 경우 지정대상 선정일이 사업연도 종료 전 3개월 이내인 경우는 다음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지정 – 규정 별표2 비고1, 규정 시행세칙 17조 ①)

2019년의 경우 지정 일정은 아래와 같음



(*1) 지정대상 선정일(규정 별표2) : 사업연도가 시작된 후 9개월 째 되는 달의 초일(단, 아래의 경우는 예외)

지정사유	지정대상 선정일
감사인 미선임	사업연도가 시작된 후 6개월 째 되는 달의 초일
상장예정법인, 회사·기관투자자가 지정요청, 상호저축은행법상 지정요청	회사 및 관계기관이 감사인 지정을 요청한 날
선임절차 위반, 지정 기초자료 미제출 등	금융감독원이 지정사유 발생 사실을 확인한 날

(*2) 지정 기초자료 제출(령 17조 ①, 규정 15조 ③) : 주기적지정 대상회사는 지정대상 선정일로부터 2주내 제출

(*3) 지정감사인 사전통지(령 17조 ②) : 지정기준일 4주 전에 지정감사인으로 예정된 법인을 문서로 사전통지

(*4) 사전통지 의견제출(령 17조 ③) : 사전통지 받은 날로부터 2주내

(*5) 지정기준일(규정 별표2) : 지정대상 선정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초일부터 6주가 지난 날

(*6) 지정감사인 본통지(령 17조 ⑤) : 지정기준일 이내에 본통지

(*7) 재지정요청(법 11조 ④, 령 17조 ⑦, ⑧) : 본통지를 받은날로부터 1주내

(2) 지정기간(규정 10조, 규정 시행세칙 10조 ②)

직권지정의 경우 획일적인 1개 사업연도에서 회사의 유형, 위반 반복, 주기적지정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1개~3개 사업연도로 세분화됨

구 분	개정전	개정후
주기적 지정대상 회사(*1)	1개 사업연도	연속 3개 사업연도
동일 외감법규 위반(*2)으로 2개 사업연도 연속 지정회사		연속 2개 사업연도
상기 외 회사		1개 사업연도

(*1) 주권상장법인,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소유·경영 미분리 비상장법인

(*2) 감사인 미선임, 감사인 선임절차 위반, 재무제표 자문 또는 대리작성, 감사전 재무제표 미제출, 지정 기초자료 미제출 등

유의사항

- ① 개정전에는 일반적으로 지정시기는 1년이었으나, 법규 위반 등이 반복되는 경우 2년으로 가중되도록 개정되었으므로 사전에 개정 외감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 및 사전 준비가 필요함
- ② 주기적 지정대상 회사는 직권지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연속 3년간 지정되며, 감사인을 지정받은 사업연도에 대하여 다시 지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정 기간을 누적하여 적용하지는 않음
(사례) 20년부터 주기적 지정으로 3년 지정(20~22년)을 받은 회사가 21년에 다시 직권지정 대상이 되는 경우 21~23년의 감사인을 지정함

(3) 회사 자산규모별 지정 회계법인 구분기준(규정 별표 4)

감사인 지정 시 아래 표의 회사가 속한 군을 고려하여 동일군 및 상위군의 회계법인 중에서 지정하며, 하위군에 속한 회사가 상위군 회계법인을 지정요청 하는 경우 상위군 회계법인 중 지정

군	회사 구분기준 (자산 규모)	회계법인 주요 구분기준		
		외감 등록회계사수	감사부문 매출	상장사 감사실적
가	5조원 이상	600인 이상	500억원 이상	100사 이상
나	1조이상~5조미만	120인 이상	120억원 이상	30사 이상
다	4천억원 이상~1조원 미만	60인 이상	40억원 이상	10사 이상
라	1천억원 이상~4천억원미만	30인 이상	15억원 이상	5사 이상
마	1천억원 미만	감사인 지정이 가능한 그 밖의 회계법인		

(*) 17년말을 기준으로 '가'군에 속하는 회계법인은 4개 사, '나'군에 속하는 회계법인은 5개사, '다'군에 속하는 회계법인은 13개사 정도로 추정됨

(4) 재지정 요청(법 11조 ④, ⑤, 령 17조 ③, ④, ⑦, 규정 15조 ⑤, ⑥)

단순 재지정 요청을 폐지하고 회사의 대형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수요(해외종속회사가 많거나 해외IR을 추진하는 회사 등)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다른 감사인으로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사유 확대

(출처 : 18.9.17 금감원보도자료)

구 분	주요 재지정 사유
유지	① 공인회계사법상 직무제한 또는 윤리규정상 독립성 훼손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연결 지배·종속회사간 동일 감사인을 선임하려는 경우 ③ 회생절차 진행 중인 회사가 법원이 선임허가한 감사인으로 지정요청하는 경우 ④ 외국인투자기업이 그 출자조건에서 감사인을 한정하는 경우
폐지	① 단순 재지정
신설	① 지정받은 회계법인이 속한 집단보다 상위 집단의 회계법인을 지정요청하는 경우 ② 지정감사인이 회사에 과도한 감사보수를 요구하는 경우 등

 유의사항

- ① 재무기준 및 관리종목 등 특정 사유에 대해 1회에 한하여 재지정 요청을 허용하던 기존의 단순 재지정 제도는 폐지되었으며, 재지정 요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상기 확대된 재지정 사유를 확인하여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및 본통지 후 재지정 요청을 고려. 한편, 상장예정회사 등에 대해 있었던 복수지정제도도 폐지됨
- ② 동일사유로 사전통지 후 2주내 의견제출 및 본통지 후 1주내 재지정요청 가능. 다만, 재지정 요청은 감사(위원회) 승인 필요

6.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강화

1) 대표자 보고의무 강화(법 8조 ④, 령 9조 ④, 18.11.1 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대표자의 직접 보고 책임을 신설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책임을 강조함

- 회사의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감사위원회)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를 대면 보고
- 단, 이사회 및 감사(감사위원회)에 직접 보고를 할 수 없는 경우 이사회 및 감사(감사위원회)에 사유를 제출하고, 내부회계관리자에게 위임 가능

2)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를 감사로 상향, 연결기준으로 확대 및 감리/제제 근거 마련(법 8조 ⑥, 회사 규모에 따라 2019년부터 단계별 적용)

모든 주권상장법인에 대해 자산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의무화하고 회사 및 감사인에 대한 감리 근거를 마련함

- 자산규모별 적용 시기(법 부칙 3조, 령 부칙 3조)

직전사업연도말 자산규모		상장사 감사인 인증수준 상향 (검토→감사)	상장사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대표자의 주총 등 보고
상장 회사	2조원 이상	2019사업연도	2022사업연도	18.11.1 이후 보고부터
	5천억원~2조원	2020사업연도	2023사업연도	
	1천억원~5천억원	2022사업연도	2024사업연도	
	1천억원 미만	2023사업연도		
비상장회사		해당사항 없음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기준이 회계감사기준에 포함됨에 따라, 외감법 26조의 감리 대상에 내부회계관리제도도 포함됨

유의사항

- ①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 적용뿐만 아니라 연결기준 확대 적용시기 결정시의 자산금액도 연결재무제표가 아닌 (별도)재무제표 기준임
- ②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감리는 재무제표 심사 또는 감리 과정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규정 23조 ⑧)
 -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에 기인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취약사항이 있다는 감사의견 또는 검토의견이 제시된 경우
- ③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있는 경우”는 감리조치의 가중 사유에 해당(외감 규정 별표7)
- ④ 자산 규모별 적용시기를 고려하여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 ⑤ 주권상장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범위가 연결기준으로 확대됨에 따라 중요한 비상장 종속기업들에 대해서도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고 운영해야함(령 9조 ② 6호)

3)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예외 대상 회사 신설(법 8조 ①, 령 9조 ④, 18.11.1 부터)

기존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 대상 회사(모든 상장회사와 자산규모 1천억 이상 모든 비상장회사)에는 예외규정이 없었으나, 아래와 같은 예외규정을 신설함

- ① 새로 외감법 대상에 포함된 유한회사
- ②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회사 (유동화전문회사, 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 등 SPC)
- ③ 그 밖에 법령상 상근하는 임직원을 둘 수 없는 등 회사의 특성상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회사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회사

4) 내부회계관리규정에 포함할 사항 확대(법 8조 ①, 령 9조 ②, 18.11.1 부터)

외감법 시행령 및 외감규정에 회사의 내부회계관리규정에 포함할 사항이 대폭 추가됨. 주요항목은 다음과 같으며, 기타 세부 항목은 시행령 9조 ② 및 외감규정 6조 ③ 참조

- 내부회계관리규정의 제정 및 개정을 위한 절차에 관한 사항
- 내부회계관리자의 자격요건 및 임면절차
- 운용실태 보고의 기준 및 절차
- 감사(감사위원회)의 운영실태 평가·보고의 기준 및 절차
- 감사(감사위원회)의 운영실태 평가·보고 결과를 대표자 등의 인사·보수 등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

- 연결재무제표에 관한 회계정보를 작성 · 공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의 예방 및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
- (*) 주권상장법인에만 해당되며,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용시기와 동일

5) 대표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령 9조 ④, 18.11.1 부터)

외감법 시행령 및 외감규정에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포함할 사항이 추가됨. 이에 따라 대표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감사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함. 운영실태보고서에 포함될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음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및 취약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계획
- 직전 사업연도에 보고한 취약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계획의 이행 결과
- 보고서에 거짓, 누락 혹은 중대한 오해의 여지 여지가 없음을 직접 확인한 사실

유의사항

- ① 대표자의 운영실태보고서 작성에 관한 기준과 절차 규정 시 고려사항 (규정 6조 ③ 1호)
 -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회사에 적합한 형태로 설계 · 운영
 -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 공시를 저해하는 위험의 예방 · 적발 · 조치를 위한 점검 체계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를 위한 객관적 성과지표
 - 성과지표 및 점검결과를 고려한 대표자의 최종의견 제시
 -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리 시 그 감리에 따른 시정조치계획을 운영실태보고서에 반영
- ② 유의한 미비점과 중요한 취약점은 모두 개별적으로 감사(감사위원회)에 보고 되어야함

6) 감사(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령 9조 ⑤, 18.11.1 부터)

외감법 시행령 및 외감규정에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에 포함할 다음 사항이 추가됨

-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 및 공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지 여부를 평가한 결과 및 시정 의견
- 운영실태보고서에 거짓, 누락 여부를 점검한 결과 및 조치내용
- 운영실태보고서의 시정 계획이 실질적인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및 대안

유의사항

- ① 감사(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작성에 관한 기준과 절차 규정 시 고려 사항(규정 6조 ③ 2호)
 -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회사의 경영진 및 회사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회계정보의 작성, 공시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할 수 없도록 설계 및 운영되는지를 평가할 것
 - 외감법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의 실질적 운영 여부
 - 대표자가 운영실태보고서 작성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는지 여부
- ② 감사(감사위원회)는 대표자의 운영실태보고서에 포함된 취약사항의 개선계획이 실질적인지 여부 및 과거 취약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핵심감사항목 등 감사인과의 Communication을 통해 인지한 재무보고 이슈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사항에 기인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7)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공시 확대(령 9조 ⑨, 규정 7조 ①, 18.11.1 부터)

주권상장법인뿐만 아니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회사는 다음 사항을 사업보고서에 첨부하여 공시하여야 함

- 내부회계관리규정 및 이를 관리 · 운영하는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회계담당자 성명, 업무, 교육, 경력 등)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의견 또는 감사의견

7.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책임 강화

1)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회사의 책임 강화(법 6조 ②~⑥, 법 42조, 18.11.1 부터 적용)

- ① 법정기한(주총 6주전 등) 내 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못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사업보고서 공시 후 14일 이내에 그 사유를 공시. 법정기한 내 증선위에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못한 주권상장법인은 그 사유를 기한 다음날까지 증선위에 제출
- ② 회사가 감사인에게 재무제표 대리작성 또는 자문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
- ③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회계부정 적발 조치에 대한 감사(감사위원회)의 역할 강화(법 22조 ③~⑤, 47조 ②, 령 14조 ⑥ 3호, 18.11.1 부터 적용)

- ① 감사인의 통보로 회계처리 위반사실을 알게 된 감사(감사위원회)는
 -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 사실을 조사·시정조치
 - 그 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제출
- ② 감사(감사위원회) 요청시 대표자는 조사·시정 시 필요한 자료제공, 필요비용 제공(불이행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③ 위반 시 회사는 직권 지정 사유에 해당

3) 내부신고자 보호 강화 및 신고범위 확대(법 28조 ①, 41조, 43조, 47조, 18.11.1 부터 적용)

- ① 신고범위에 대리작성 및 자문 등 추가
- ② 신고 또는 고지를 받은 자가 신고자 등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 누설(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③ 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자(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설)
- ④ 신고자의 인적 사항 등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한 자(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상향)

유의사항

- ① 재무제표 작성능력이 부족하여 주총 6주전에 재무제표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감사인의 자문 등을 요구하거나 받는 경우 감사인 지정조치 및 벌금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으므로 기말 결산 전에 자체 결산능력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 활용 고려
- ② 회계부정 발생 시 감사(감사위원회)의 역할이 확대되고 과태료 조치가 법규에 신설

8. 감리 제도 변경 및 감독/재제 강화

1)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법 26조 ①, 규정 23조, 19.4.1 이후 감리부터 적용)

- ① 최근 공시자료 등을 중심으로 회사의 재무제표 오류가 있는지 심사
- ② 심사결과 특이사항 발견시 회사의 소명을 듣고
 - 회사의 소명이 타당한 경우 종결
 - 심사결과 과실이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공시를 권고하여 회사가 수정을 하면 종결(경고조치)
- ③ 재무제표 심사 결과 다음의 경우 감리 실시(규정 23조 ① 2호)
 - 심사결과 고의 · 중과실에 의한 위반혐의가 발견된 경우
 - 과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경고를 2회 이상 받은 상태에서 회계처리 위반 혐의 발견
 - 감리집행기관의 수정요구를 회사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
- ④ 매년 6월에 다음 연도에 중점 심사할 업종 및 계정 등을 공표(규정 24조 ①)

2) 감리 절차 변경(규정 24조 ④, ⑤, 30조 ⑤, 18.11.1부터 적용)

- ① 조사과정에 대리인(변호사, 임직원) 참여 가능(조사 과정을 녹음, 기록하는 경우 대리인 퇴거)
- ② 조치대상자 및 감리업무 수행기관의 안전담당 임직원은 감리위원회 위원과 개별 접촉 금지

3) 외부감사법에 회사 및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법 35조 ①, ②, ③, 18.11.1 이후 작성된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부터 적용)

- ①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계처리기준 위반한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작성 시 과징금

회사	회사 임직원 및 감사(위원)	감사인
위반금액 20% 이내	회사 과징금 10% 이내	감사보수 5배 이내

- ② 금융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8년까지 부과 가능(감리 개시 경우 시효 진행 중단)

4) 회계부정 관련 재제 강화(법 29조 ①, 39조 ①, ②, 48조, 18.11.1 이후 위반행위부터 적용)

- ① 회사 임원에 대한 6개월 이내 직무정지 조치 신설
- ② 회사 및 감사인 회계부정 관련 징역 및 벌금의 상향(가중) 및 병과
 - 징역 7년이하 -> 10년 이하
 - 벌금 7천만원 -> 이득 또는 회피 손실의 2배~5배(징역과 병과)
 - 가중처벌: 손익 또는 자기자본 분식 금액이 자산의 5%(최소 500억원) 이상인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 10%(최소 천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II. 회계

1. 기업회계기준 제1116호 '리스'

2019년부터 적용될 K-IFRS 제1116호 '리스'로 인해 리스이용자 회계처리에 중대한 변화가 예고됨

1) 주요 개정 내용

현행 리스기준서에서는 재무상태표에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는 금융리스와 이를 인식하지 않는 운용리스로 구분하여 인식

그러나 새 리스기준서에서는 면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재무제표에 인식

(*) 면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아래 단기리스 또는 소액 기초자산리스)

: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또는 다른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비용 인식 (1116. 5, 6)

• 단기리스

- 리스개시일에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를 의미하며 리스이용자의 매수선택권이 있는 리스 경우는 단기리스가 아님
- 기초자산 유형별로 인식 면제 여부 선택

• 소액 기초자산리스

- 기초자산이 새것 일때 USD 5,000 이하인 리스
- 리스별로 면제여부 선택

2) 리스의 식별

리스의 정의 :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1)의 사용 통제권(*2)을 일정기간 이전하는 계약이나 계약의 일부 (1116. 9)

(*1) 식별되는 자산

- 계약상 자산이 분명히 특정되어 식별되거나 암묵적으로 특정되는 경우
- 단, 공급자가 해당 자산을 대체할 실질적 권리를 사용기간 내내 보유하고 있다면 리스이용자는 식별되는 자산을 보유한 것이 아님

(*2) 사용통제권

- 사용기간 동안 자산의 사용을 지시하고 발생한 경제적 효익의 대부분을 얻을 권리

3) 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

리스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고 기초자산이 소액이 아닌 모든 리스에 대하여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함

(1) 최초인식

□ 사용권 자산 : 다음의 원가로 측정(1116.24)

- ①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 ②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받은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 ③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 ④ 리스조건에서 요구대로 기초자산을 해체/제거, 기초자산이 위치한 부지 또는 기초자산을 복구할 때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원가의 추정치

□ 리스부채 : 다음의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내재가치)로 측정

- ① 고정리스료 : 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받은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 ② 변동리스료 : 지수나 요율에 종속되는 경우에만 측정(리스개시일 현재 지표 반영)
- ③ 잔존가치보증 : 보증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④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 리스이용자가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만 반영
- ⑤ 해지수수료 : 리스기간이 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2) 후속측정

□ 사용권 자산 : 감가상각, 손상검사 등

□ 리스부채 : 유효이자율법에 따른 측정(리스기간, 리스료 등 추정 변경 등에 대한 재평가)

□ 변동리스료(지수나 요율에 기초하지 않은 경우) : 발생한 기간에 손익으로 인식

4) 시행일 및 경과규정

□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 가능

□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최초 적용일(기준서를 처음 적용하는 기간의 기초)에 계약이 리스인지, 리스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다시 판단하지 않을 수 있음. 이 경우 모든 계약에 적용

□ 리스이용자의 경과규정 : 하기 방안 중 선택

- ① 기업회계기준서 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른 완전 소급
- ② 소급누적효과를 최초적용일의 기초이익잉여금에 반영(비교표시 재무제표는 재작성 없음)

□ 리스제공자의 경과규정 : 영향 없음. 단, 중간 리스제공자의 경우 전대 운용리스에 대한 영향 재검토

유의사항

- ① 현행 기준서의 미래 리스료에 대한 정보의 공시(*)는 새 기준서 도입 시 인식될 부채에 대한 기본 정보이므로 주석공시 시 누락하지 않도록 당기 결산 시 유의 (건물 임차료 등)
 - (*) 현행 기준서의 미래 리스료에 대한 정보의 공시
 - 해지불능운용리스에 대한 다음의 각 기간별 미래 최소리스료 및 그의 총합계
 - 당기수익으로 인식된 조정리스료 총액
- ② 새 기준서에서는 운용리스와 금융리스 구분 없이 모든 리스에 대해 자산과 부채를 인식해야 하므로(단,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 제외) 리스가 포함되어있는 거래인지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계약에 리스가 명문화되지 않은 경우에도 실질을 고려하여 리스 포함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함
- ③ 리스개시일에 단기리스 면제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후속기간에는 충족하지 못할 수 있음
[사례]
 - 계약내용 : 최초 리스기간은 1년, 단 종료일 3개월이전까지 이용자는 연장선택 가능
 - 리스개시일 : 연장선택권의 행사가 상당히 확실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단기리스 면제조항 적용
 - 이후 최초 리스기간 종료 3개월 전 연장선택권을 행사한 경우, 후속 리스는 새로운 리스이며 리스개시일 현재 리스기간이 15개월이므로 단기리스 면제 대상이 아님
- ④ 리스기간 연장선택권 적용기간 고려시 계약 외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도 포함하여 고려
 - 현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5년까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고 있음. 동 법에 따른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집행가능한지가 현재 논의중임. 또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은 2018년 법 개정으로 10년으로 연장될 예정임

2.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3호 '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

1) 해석서 제정 경과 및 법인세 불확실성의 정의

2017년 6월 IFRS 해석위원회는 법인세 처리에 불확실성이 있을 때 K-IFRS 제1012호 '법인세'의 인식과 측정 지침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다루는 IFRIC 23 'Uncertainty over Income Tax Treatments'를 발표함

이에 따라 2017년 12월 한국회계기준위원회는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3호 '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의 제정안을 의결하였으며, 2018년 하반기에 금융위원회 보고 완료 후 공표될 예정임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란 기업이 적용한 법인세 처리를 과세당국이 수용할지 불확실한 경우임

2) 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 영향 인식 방법

□ 기업이 세무신고에서 사용하였거나 사용하려는 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을 과세당국이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지(probable)**를 고려

(단, 과세당국이 법인세 처리를 조사할 것이고, 조사시 관련 정보를 모두 알고 있다고 가정하므로 적발 가능성은 고려하지 않음)

- 과세당국이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probable)고 판단한 경우
 - 회사의 법인세 처리와 일관되게 산정
- 과세당국이 수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not probable)고 판단한 경우
 - 관련 산정에 불확실성의 영향을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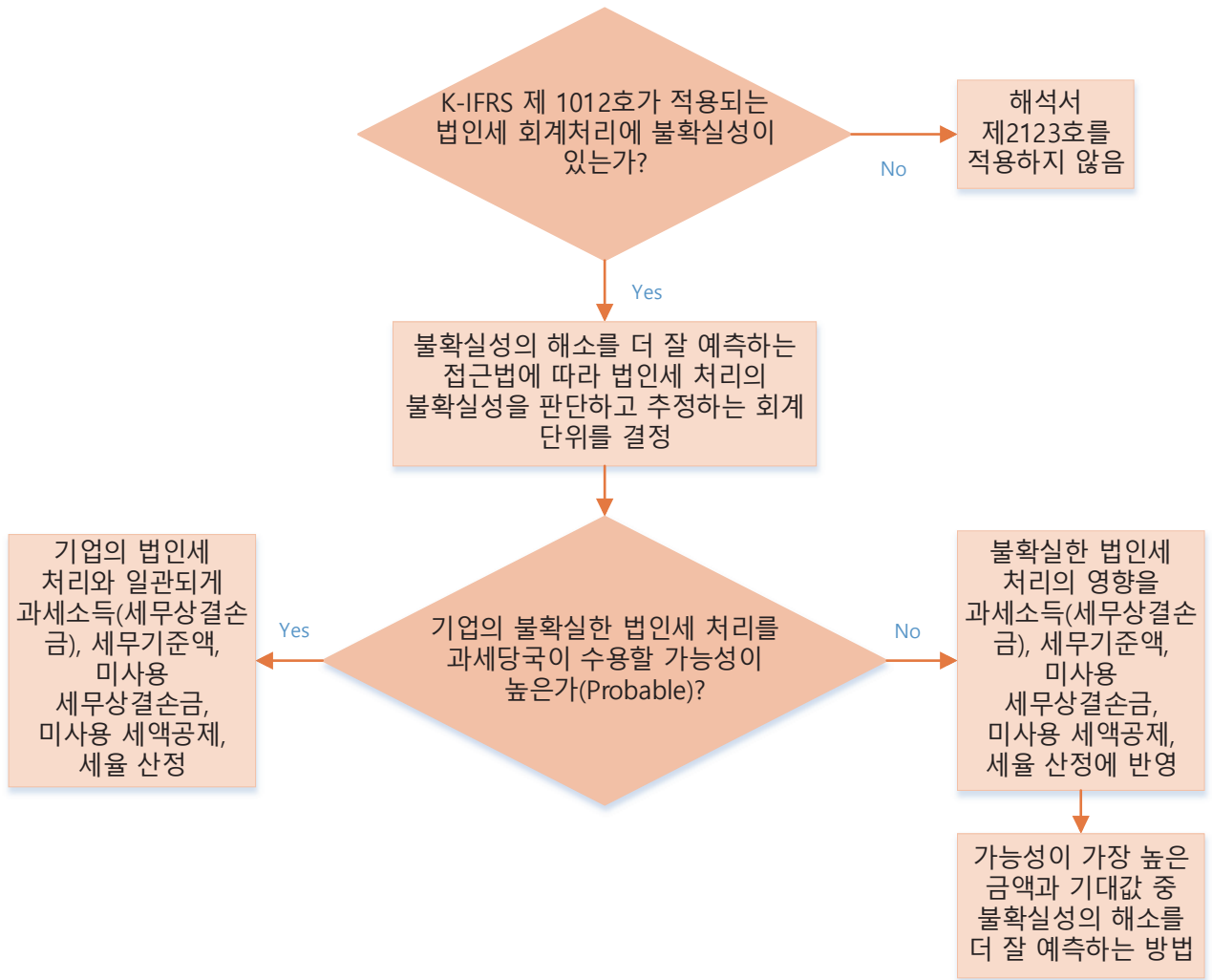
□ 불확실성의 영향을 반영 시

-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금액 또는 기댓값 중 불확실성의 해소를 가장 잘 예측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 모두에 대해 일관되게 불확실성의 영향을 반영
- 사실과 상황의 변화시(*) 판단과 추정을 재평가

(*) 과세당국의 조치, 과세당국이 유사 항목에 대해 특정한 입장을 취했다는 증거, 또는 특정 법인세 처리에 대한 과세당국의 조사권한 만료 등 사실과 상황이 달라지거나 불확실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정보가 있는 경우

단, 과세당국이 특정 법인세 처리에 대해 동의나 부인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상황의 변화나 새로운 정보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 요약]



3) 공시 요구사항

- ❑ 새로운 공시 요구사항은 없음. 단, 법인세 처리의 불확실성에 대해 경영진이 내린 유의적인 판단에 대한 공시를 적용하여 경영진이 사용한 가정과 추정에 대한 정보 공시 필요
- ❑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과세당국이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 내렸다면 그 불확실성의 잠재적 영향을 법인세와 관련된 우발부채와 우발자산으로 공시할지 판단

4) 시행일 및 경과규정

- ❑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 가능
- ❑ 경과규정 : 하기 방안 중 선택
 - ① 기업회계기준서 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른 완전 소급적용 (사후판단을 사용하지 않고 해석서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 ② 소급누적효과를 최초적용일의 기초이익잉여금에 반영(비교표시 재무제표는 재작성 않음)

3. 2018년 시행 기준서 적용 관련 유의사항

1) 기준서 제 1109 호 '금융상품' 시행에 따른 금융자산 분류 시 유의사항

□ 환매가 가능하거나 정해진 만기에 청산되는 수익증권/펀드

- 투자자의 요청에 의해 환매가 가능하거나 정해진 만기에 청산되는 수익증권/펀드 투자액은 발행자 입장에서 자본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으므로 투자자 입장에서도 채무상품에 해당함
- 따라서 지분상품에 적용하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분류할 수 없음
- 투자성과를 배분받으므로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된 금융상품에도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으로 분류함. 단, 현금성자산의 정의를 충족한다면 현금성자산으로의 구분은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 분류와 무관하게 가능함

□ 환매가 가능한 출자금

- 탈퇴 시 환매가 가능한 협회·조합·기금 등의 출자금은 발행자 입장에서 자본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으므로 투자자입장에서도 채무상품에 해당함
- 따라서 지분상품에 적용하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분류를 적용할 수 없음
- 투자성과를 배분받거나 손해를 부담하는 등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으로 분류함

□ 전환상환우선주 투자

- 상환권, 전환권을 포함하고 상환권·전환권이 행사되지 않는 경우 일정기간 후 자동으로 보통주로 전환되는 전환상환우선주에 투자한 경우 발행자 입장에서 자본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고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복합계약의 현금흐름 특성이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되지 않으므로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으로 분류함.
- 전환권이 없는 상환우선주의 경우에도 '배당이나 잔여재산청구권'이 존재하면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만으로 구성되지 않은 것이므로 **당기손익-공정가치 금융자산**으로 분류함.

유의사항

- ① 기준서 제1109호 시행으로 기존 제1039호에서 매도가능금융상품으로 분류하여 공정가치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던 투자상품 등이 제1109호에 따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분류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 결산 시 주의가 요구됨

2) 해석서 제 2122 호 '외화거래와 선지급·선수취 대가'의 시행

- 외화거래를 최초 인식하는 경우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함. 이때 '거래일'을 '대가를 선수취하는 날' 또는 '수익을 인식하는 날'로 보는 실무적 다양성이 존재하였음
- 자산, 비용, 수익의 최초 인식에 적용할 환율을 결정하기 위한 '거래일'은 선지급/선수취하여 비화폐성자산/부채(선지급금/선수금)를 최초로 인식하는 시점임
- 따라서 선수금을 최초로 인식하는 시점(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인식하고, 이후 선수금을 제거하면서 동일 금액의 수익을 인식함. (진행기준 수익인식의 경우에도 동일)
- 경과규정에 따라 (1) 소급적용하거나 (2) 당기초 또는 전기초를 선택하여 그 날 이후 인식한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자산, 비용, 수익 모두에 전진 적용하는 것도 가능함

유의사항

- ① 해석서 제2122호의 시행으로 외화대금을 선지급(수령)하고 이후 자산을 수령(인도)하여 장부에 계상할 때 동 자산의 취득가액은 "대금지급(수령)시점"의 환율을 적용하여 계상하도록 함을 명확히 하였음. 해석서와 달리 회계처리하고 있었던 경우 당기 결산 시 주의가 요구됨

4.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감독지침' 발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제약·바이오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와 관련된 감독지침"을 발표하였음 (18.9.19)

동 지침은 새로운 회계기준이나 해석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상황에 따라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지침과 다르게 회계처리 할 수 있음

1) 연구개발의 자산화

□ 기술적 실현가능성 판단

- 약품유형별로 개발단계의 특성과 객관적 확률통계등을 감안하여 기술적 실현가능성에 따른 자산화 가능 단계를 설정
- **아래 기준에 따라 자산화 한 경우**, 회사는 기술적 실현 가능성 판단에 필요한 **객관적 증빙자료** 제시, 만약 **아래 기준 전 단계에서 자산화하는 경우 감리과정에서 더 면밀히 검토**할 것임

약품유형별 자산화 가능단계

유형	자산화 가능 단계	설정근거
신약	임상 3상 개시 승인	- 장기간 다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시험약의 안전성, 약효에 대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상태(임상 3상 개시 승인 이전)에는 일반적으로 자산가치의 객관적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바이오시밀러	임상 1상 개시 승인	- 정부가 오리지널약과의 유사성 검증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 (임상 1상 개시 승인 이전)에서는 일반적으로 자산가치의 객관적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제네릭	생동성시험 계획 승인	- 정부가 오리지널약과의 화학적 동등성 검증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일반적으로 자산가치의 객관적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진단시약	제품 검증 (허가신청, 외부임상 신청 등)	- 외부의 객관적인 제품검증이 없는 상태에서는 일반적으로 자산가치의 객관적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 원가 측정의 신뢰성 확보

- 개발활동과 직접 관련있는 원가만 자산 인식(재료비, 노무비, 외주비 등 개발단계별로 구분집계), 개발비와 연구비가 혼재되어 구분이 어려운 경우 전액 비용

□ 상업화 가능성 확인 및 손상평가

- 상업화 의도 및 능력, 기술·재정적 자원입수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제시 필요 (감리과정에서 사업계획 등을 통해 확인 예정)
- 자산 인식 후에는 손상기준에 따라 미래 경제적 효익을 평가

2) 공시 관련 사항

- 연구개발비를 자산화한 금액을 “개발단계별”로 주식 공시 (감리 과정에서 중점 확인 예정)

3) 향후 추진 계획

- 감리결과 발견된 연구개발비 자산화 관련 기술적 실현가능성 판단 오류는 계도 조치 (경고, 시정요구 등) 예정
- 오류에 대해서는 과거 재무제표를 소급재작성해야 하며, '18년 3분기 또는 사업보고서상 재무제표에 오류수정 반영시 별도 조치하지 않을 예정
- 재무제표 재작성으로 영업손실이 증가하여 관리종목 가능성이 커진 기업은 현행 기술특례상장 요건에 준하여 지원 예정

5. 기타 결산 유의사항

1) 연결 범위 결정

- 이사회에서 관련활동이 결정되고, 회사가 과반의 선임권 및 과반 지분율을 보유한 경우에도 다음 각각의 사례에서 연결 제외 여부를 검토해야 함.
 - 정관에 이사회 결의 시 만장일치를 요구하는 조항이 존재하는 경우
 - 주주간 계약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특별결의가 요구되며, 회사의 선임권으로는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 주주간 약정에 **상대주주의 콜옵션**(잠재적 의결권)이 포함되어 있으며, 동 옵션이 실질적인 권리로 판단되는 경우

유의사항

- ① 과반의 지분율 또는 과반의 이사를 선임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주간 약정이나 정관의 조항 고려 시 연결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됨

2) 영업활동 현금흐름 표시

□ [감리지적사례] 관계기업주식 취득 관련 선급금의 현금흐름표 표시

- 회사는 관계기업 지분 취득 약정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액 90을 선급금으로 분류

기초 선급금 (A)	20	→ 관계기업 지분취득 약정에 따른 지급액 90 포함 → 회사는 현금흐름표에 영업활동 현금유출로 표시
기말 선급금 (B)	120	
선급금 증가 (B-A)	100	

- 선급금 증가 100 중 90은 관계기업지분 취득을 위한 선급금이므로 **투자활동 현금유출**로 표시하여야 함. 10(운전자본 변동으로 인한 증가)만 영업활동 현금유출로 표시함.
- 유사한 사례로 미지급금의 증감에 유형자산 취득 관련 미지급금이 포함된 경우 비현금거래로 구별하고 실제 지급하는 시점에 투자활동 현금유출로 표시함.

유의사항

- ① 영업현금흐름 표시는 금감원의 테마감리항목으로 선정되면서 지적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개정 외감법에 따라 감사인 지정 사유에 추가되는 등 재무제표 작성시 주의가 요구됨.

III. 감사

1. 감사기준

1) 회계감사기준 개정 – 핵심감사제 전면도입 등

□ 핵심감사사항(Key Audit Matters : KAM) 기재를 상장사에 도입

감사인인 감사(감사위원회) 등과 협의하여 핵심감사사항을 선정하고 감사보고서에 선정이유, 감사인이 수행한 절차 및 그 결과를 기술하여야함(감사기준서 701 “감사보고서 핵심감사사항 커뮤니케이션”)

(1) 핵심감사사항의 정의 및 선정방법

- 정의 : 당기 재무제표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
- 선정방법 : 감사(감사위원회) 등과 커뮤니케이션한 사항중에서 선택됨
- 선정 시 고려사항
 - ① 유의적 위험으로 식별된 분야
 - ② 추정 불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식별된 회계추정치
 - ③ 유의적 사건이나 거래
- 핵심감사사항의 사례

구분	핵심감사사항	식별사유
유의적 위험으로 식별된 분야	- 수주산업의 진행기준에 따른 수익인식 - 새로운 기준서의 적용	- 미청구공사금액 회수가능성에 대한 평가 - IFRS 15의 최초적용
추정 불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식별된 회계추정치	- 영업권 손상평가 - 개발비 자산화	- 영업권이 포함된 CGU 영업손실 - 개발비 증가 및 감독동향
유의적 사건이나 거래	- 사업결합	- 유의적인 수준의 영업권/무형자산 인식 가능성

(2) 도입 취지

감사보고서가 회사의 주요 재무적 이슈사항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정보이용자의 유용성 증대

III. 감사

(3) 상장사(코넥스 제외)만 적용 대상이며, 적용대상 별 시행시기는 다음과 같음

적용대상(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상장기업)	시행일
자산 2조이상	18.12.15 이후 종료 사업연도
자산 1천억이상 2조미만	19.12.15 이후 종료 사업연도
자산 1천억미만	20.12.15 이후 종료 사업연도

(*) 상기 금액은 (별도)재무제표 기준이며, 기존에 수주산업 관련 실무지침 (회계감사실무지침 2016-1)을 적용받던 기업 중 상장기업은 순차적으로 감사기준서 701을 적용받게 됨

□ 상장사 감사인의 업무수행이사 성명 기재

- 현재는 감사보고서 상 회계법인 대표이사만 기재하고 업무수행이사의 성명은 기재하지 않았으나, 18년 기말감사보고서부터는 상장기업 감사보고서에 업무담당이사의 성명을 기재하여야함 (실명 공개로 개인의 안전에 위협이 예상되는 경우는 예외)
- 취지 : 감사보고서 실명제로 감사에 대한 책임 강화 및 감사품질 제고

□ 감사의견의 전반부 배치 등 감사보고서 체계 개편

- 현재 감사보고서 후반부에 표시되는 감사의견을 감사보고서 가장 앞부분에 표시하도록 순서를 변경하고, 감사의견근거 단락 신설 등
- 감사보고서 기재사항 신·구 비표

기존	개정
• 재무제표 감사에 대한 보고 •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 감사인의 책임 • 감사의견 • (강조사항) • (기타사항)	• 재무제표 감사에 대한 보고 • 감사의견 • 감사의견근거 •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 • (강조사항) • 핵심감사사항 • (기타사항) •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과 지배기구의 책임 • 재무제표 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 • 업무수행이사 성명

2)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기준 제정(예정)

외감법 개정에 따라 상장회사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가 감사로 상향됨(외감법 8조 ⑥). 이로 인해 미국 상장회사 감사기준인 PCAOB AS2201을 참고하여, 우리나라가 도입한 국제감사기준 체계에 맞게 구성을 변경함.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기준이 회계감사기준에 포함(감사기준서 1100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됨에 따라, 금융위의 사전승인을 거쳐 한공회가 18년 내에 발표할 예정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기준 주요 내용

구 분	주요내용
감사목적	- 다음 목적을 모두 달성 • 평가기준일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점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얻음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감사의견을 표명하고 경영진 및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함
감사대상과 준거기준	-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평가기준일 현재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 및 운영 개념체계”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표명함 -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수행할 때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이 외부감사법의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모범규준”에 따라 작성되었는지를 평가함
통합감사	- 아래 목적을 모두 달성하기 위한 통제테스트를 설계하여야 함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을 뒷받침할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입수 • 재무제표감사에서 통제위험 평가를 뒷받침할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입수
감사의견 변형	- 부적정의견 평가기준일 현재 하나 이상의 중요한 취약점이 존재하는 경우, 재무제표감사의견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하여야 함 - 범위제한 감사업무범위에 제한이 있는 경우, 재무제표 감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함
운영실태 보고서의 부적절한 기재 등	- 불완전하거나 부적절한 운영실태보고서의 내용을 경영진이 수정하지 않는 경우, 감사인이 운영실태보고서가 불완전하거나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사유를 기타사항문단에 기술
경영진 및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 유의적 미비점과 중요한 취약점의 경우 경영진과 지배기구에게 감사보고서가 발행되기 이전에 서면으로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함 - 모든 미비점을 경영진에게 감사보고서 발행 이전에 서면으로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하고,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이 언제 수행되었는지 또는 언제 수행될 예정인지를 지배구구에 알려야 함

2. 감리동향

1) 산업별 특성, 시장지표 등을 활용한 회계감리방식 개선

금융감독원은 분식회계 발생시 광범위한 투자자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대기업 등 사회적 중요기업에 대하여 **산업별 특성 및 시장지표 등과의 연계성을 밀착분석**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식의 회계감리 방식 개선 계획 발표 (18.7.23 금감원 보도자료)

□ 밀착 분석 대상

회계분식 발생시 사회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상장대기업, 경기취약 경기민감 업종 내 상위기업 등 사회적 중요기업에 적용

- **(50대 상장사)** '17년말 시가총액 및 자산규모를 기준으로 상장사 중 50대 기업을 선정하여 2018년 하반기부터 밀착 분석 착수
- **(경기취약/민감 업종)** 경기전망이 부정적인 경기취약 업종, 유가 환율 등 거시지표의 변동에 민감한 경기민감 업종내 상위 대기업 등으로 분석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

□ 밀착 분석 방식

분석대상 회사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해당 업종별 특성과 개별업체 관련 정보 등을 함께 입체적으로 검토하여 회계 취약분야를 분석한 후 소명이 되지 않을 경우 회계감리 착수 고려

- **(업종별 분석)** 해당 업종의 경기상황, 업종특성 경기지표 흐름, 자산별 비중비교, 업종만의 주요 특이계정의 비중 및 추이 검토, 업종별 회계분식 사례 분석, 상위 주요 경쟁업체의 재무손익 흐름과 비교 등 업종별 분석

[업종별 경기지표와 개별업체 비교분석 예시]

- **철강업** : **철강제품**(열연, 냉연강판 등) **판매단가** 등 경기지표가 악화되고 있으나 영업이익 규모 및 유형자산 비중이 크게 증가
- **해운업** : **BDI 운임지수, HRCI 운임지수** 등 경기지표가 악화되고 있으나 영업이익 및 매출채권 규모가 커지고 영업현금흐름은 악화
- **도소매유통업** : **소비자심리지수** 등 경기지표가 악화되고 있으나 유형자산 투자규모가 급격히 증가
- **전기전자제조업** : **PC·스마트폰 판매실적, DRAM 가격** 등 경기지표가 양호 해지고 있으나 매출규모는 하락
- **정보통신서비스업** : **인터넷, 이동전화 가입자수, 이용률** 등 경기지표가 악화되고 있으나 영업이익은 크게 증가

- **(개별 분석)** 업체별 담당자들이 해당 기업에 대해 최대 입수 가능한 정보(*)를 모니터링하여 비경상적인 거래, 이상징후 발생 여부 등을 개별 분석

(*) 최근 실적, 공시, 주가, 신용평가사 등 분석보고서, 민원, 언론, 국회 등에서 제기된 회계의혹 등

2) "특수관계자거래 주식 공시 위반시 감리결과 중조치 사례 등 안내"

최근 감독기관은 감리결과 특수관계자 거래 주식 공시 위반으로 중조치된 사례를 하기와 같이 공유 하였으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말 결산시 유의 필요

[주요 감리지적 사례]

• 특수관계자 식별 누락

- 자산유동화회사와 거래가 있는 경우 유동화회사의 설립목적, 자금조달구조 등을 검토하여 특수관계자인지 여부 추가 검토 필요
- 20% 미만의 지분을 소유한 회사와 경우에도 주요 주주, 임원겸직현황 등을 통하여 특수관계자 유무 등 확인 필요

• 기중 거래금액의 공시 누락

- 기말 잔액 뿐만 아니라, 기중 거래금액의 증가와 감소도 각각 총액으로 공시필요
- 특히 기말에 특수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도 해소시점까지의 거래금액이 공시되어야 함

• 매출매입 거래와 자금거래 이외의 비경상적인 거래에 대한 공시 누락

- 일반적인 영업거래나 자금거래외에 부동산 취득 등의 비경상적인 거래에 대해서도 관련 약정 등 공시

• 보증 담보 공시금액 누락 또는 과소 공시

- 이사회 의사록, 보증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통하여 관련 보증·담보제공 내용이 있는지 완전성 확인
- 금융기관을 통해 제공한 계약이행보증이나 시행사인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하는 연대보증도 공시대상임
- 동 거래 공시시 차입금 잔액이 아닌 보증제공액(즉, 보증한도액)과 담보 설정액을 공시

• 연결재무제표 주석시 종속회사 거래 공시누락

- 종속회사의 개별재무제표상 특수관계자(연결실체 외)와의 거래도 연결재무제표 주석에 완전하게 취합되었는지 확인

3) “중점 감리 대상 회계이슈”에 대한 심사

금융감독원은 사전예방적 회계감독 및 감리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14년부터 매년 4가지 중점 감리대상 회계이슈를 사전예고하고, 해당 이슈에 한정한 심사감리를 수행하고 있음.

동 항목들은 감리시 누적적으로 유의하게 검토되는 항목이므로 기말 결산시 특히 유의 필요

[연도별 중점 감리대상 회계이슈]

연도	중점 감리대상 회계이슈
2019년	- 현재 회계이슈 선정을 위한 의견 수렴중이며 12월에 발표될 예정임
2018년	- 개발비 인식·평가의 적정성 - 국외매출(수주산업 제외) 관련 회계처리의 적정성 - 사업결합 회계처리의 적정성 -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회계처리의 적정성
2017년	- 비시장성 자산평가의 적정성 - 수주산업공시의 적정성 - 반품/교환 회계처리의 적정성 - 파생상품회계처리의 적정성
2016년	- 미청구공사(초과청구공사) 금액의 적정성 - 원자재 등 비금융자산 공정가치 평가 및 관련 공시 - 현금흐름표상 영업현금흐름 공시 - 유동/비유동 분류의 적정성
2015년	- 매출채권 매각 관련 회계처리 -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 영업이익 등 산정 - 이연법인세자산 회계처리
2014년	- 퇴직급여부채 보험수리적 측정 - 무형자산(영업권, 개발비) 평가 - 신종증권 등의 자본과 부채 분류 - 장기공사계약 관련 수익인식

IV. 기타 - 감사위원회 관련 변경사항

1.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 강화

개정 외감법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강화되었다는 점이며,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의 3가지로 요약됨

- ① 감사인 선임 권한이 내부감사기구(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로 이관
- ② 회계부정 적발시 감사위원회가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조사 및 시정조치
- ③ 내부회계관리규정에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을 명시하고, 내부회계 평가에 관한 대면회의 개최 및 평가보고서 작성·공시 의무화

그리고, 개정 외감법에서 신설된 과징금과 무거워진 징역 및 벌금 부과 대상에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도 포함됨

나아가 지배구조 보고서의 의무화(2019년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부터),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등도 지배구조의 주요 당사자인 감사위원회의 역할에 중요성을 더하고 있는 상황임

2.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제정

□ 제정 배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회계제도 개혁과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핵심 당사자인 감사위원회가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2018년 6월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을 발표하였음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은 강제 규범이 아닌 자율 규정으로서 감사위원회와 관련된 최선의 관행(best practice)을 제시함. '18년 8월에는 모범규준의 실무적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매뉴얼·체크리스트도 발표되었음

□ 주요 특징

- ① 국제적인 관행, 현행 법령의 요구를 고려하여 감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미래지향적 관점의 최선 관행 제시
- ② 감사위원회의 설치·구성부터 운영, 역할 및 책임, 의사소통 등에 대한 종합적 접근
- ③ 업종 및 규모에 따른 유연한 적용이 가능
- ④ 감사위원회 모범규준과 감사 모범규준을 별도로 제시
- ⑤ 모범규준의 규정에 대한 세부적인 안내지침과 관련 법규, 문서 작성 양식 등을 포함한 모범규준 매뉴얼·체크리스트 제공

□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구성 및 주요 내용

구성	주요 내용
내부감사기구	- 자산총액 1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기업에 감사위원회 설치를 권고 - 감사위원회 산하에 이를 보좌하고 감사 실무를 수행하는 내부감사부서 설치
구성, 선임 및 자격요건	- 최소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전원 사외이사를 권고 - 최소 2인 이상의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포함 - 위원장은 회계, 재무 관련 상당한 지식 보유 필요
감사위원회 운영	- 분기별 최소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할 것을 권장 - 위원회의 독립성과 활동 내용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 필요 - 입문교육과 보수교육으로 구분하여 위원에게 지속적인 교육 제공
감사위원회 역할과 책임	- 회계기준의 타당성과 회사의 회계 및 재무기능을 평가 - 내부신고제도의 신고 방식, 조사와 후속조치 등을 확인 - 내부통제시스템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리스크관리시스템을 감독 - 내부감사부서 책임자(임원급)에 대한 임면 동의권 보유
외부감사인과의 관계	- 최소 분기 1회 이상의 주기적인 의사소통 권고(경영진 참석 배제) - 회사의 재무제표 직접 작성에 관해 점검 - 외부감사 결과, 회계 관련 평가 및 추정 등에 대해 검토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	- 이사의 직무 관련 부정행위 등 발견시 외부감사인 및 이사회에 전달 - 감사위원회 활동 내역을 사업보고서 등에 공시하고 주주총회에 보고

□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매뉴얼·체크리스트

모범규준 조항별 안내지침, 관련 법률과 규정 및 다음의 사례가 포함

-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 감사위원회 자체 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
-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와 관련된 감사위원회의 고려사항
- 회사의 회계 및 재무 기능을 평가하기 위한 고려사항
- 내부신고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일반적인 특성
- 내부감사부서의 역할 수행을 위하여 감사위원회가 취할 절차, 내부감사 중점 검토 영역 예시
- 외부감사인 입찰공고 양식, 외부감사인 선임회의록 양식
- 감사 관련 외부감사인과의 논의사항 양식
- 감사 종료 단계에서 사용되는 외부감사인 평가표, 외부감사 담당 회계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감사과정에 대한 평가항목 포함)
- 감사위원회 관련 내역 공시 사례(교육 실시 내역 포함)

□ 실무적 대응 전략에 대한 제언

비록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이 강제 규범은 아니지만, 회계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정책적인 방향과 지배구조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재 시장 환경을 고려할 때 준수의 필요성은 매우 높음

모범규준의 모든 사항을 일시에 적용하기 보다는 기업의 상황에 맞게 도입 범위와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모범규준의 준수를 위한 회사의 대응 전략은 크게 3단계로 구분되며 세부 고려사항은 하기와 같음

① 모범규준의 도입 수준에 대한 회사 정책 결정

감사위원회 관련 법규 및 모범규준의 내용과 회사의 감사위원회 운영 규정 및 현황을 비교하여,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을 얼마나 수용할 것인지, 개정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과도 어떻게 효과적으로 통합할 지를 검토함

자산 2조 이상 유가증권 상장사의 경우 '19년부터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가 의무화되므로 감사위원회 활동 관련 공시 범위도 미리 고려할 필요가 있음 (금감원 보도자료에 의하면 핵심원칙별 세부 가이드라인이 발표될 예정이나, 발표시기는 현재 미정임)

② 회사의 관련 제도 및 절차의 점검

감사위원회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회사의 정책 및 절차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수정하거나 새로운 제도를 수립해야 함

예를 들어, 감사위원회를 지원하는 내부감사부서의 조직 체계를 점검하고, 회의 및 보고 절차, 인사규정 등을 정함

내부감사부서 조직 점검시 고려사항

- 내부감사부서 책임자의 직책, 임면 동의권 부여 및 임면 절차에 관여하는 방법
- 내부감사부서의 업무 범위 및 규정 점검
- 내부감사업무에 관련된 부서의 조직상 배치 및 부서별 업무분장 (타부서와의 협업 등 포함)
- 내부감사부서 구성원의 성과평가에 관여하는 방법

또한, 외부감사에 관한 감사위원회의 역할은 외부감사인의 선임 시부터 연중 지속적으로 수행되므로 이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비롯하여, 연간 계획 및 절차 수립이 필요함

외부감사 관련 감사위원회 업무

단계	주요 업무 내용
선임 계획 및 준비	- 지배구조 상 의사결정에 참여할 주체 확정 - 고려사항 : 독립성, 전문성, 감사품질에 초점(덤핑 보수 제외), 감사인의 Commitment - 최종 후보 법인에 대한 리스트 작성 및 조사 - 제안 요청 서류의 준비 및 승인
선임 절차 진행 및 감사인 선정	- 제안요청서 발송, 회계법인의 입찰 참여 의사 확인 - 내부 의견 청취 - 제안서 접수 - 회계법인과의 회의(필요 시 Presentation) - 감사인 선정
감사계약 체결 및 검토	- 계약조건(감사기간, 감사보수, 독립성, 전문성)의 적정성 검토 - 선임단계에서의 내용과 일치 여부 확인 및 계약 검토내용 문서화
감사업무 착수~종료	- 최소 1분기 이상 Private Session -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및 외부감사 과정 점검 - 외부감사결과 검토 및 외부감사인 평가

③ 실무 관행의 변화가 필요한 사항 확인

향후 실무 관행이 변화될 수 있는 부분은 감사위원의 전문성 제고 및 유지를 위한 교육 제공, 내부신고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능력을 포함한 회계 및 재무기능 점검, 경영진이 참석하지 않은 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간의 Private session(분기 1회 이상) 등이 있을 수 있음